유형 비과세내용 (조세특례제한법 조문) 3.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(농특세법§4(3))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조특법§6)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(조특법§7) 4. 비거주자, 외국법인 감면(농특세법§4(5)) ① 조세특례제한법§21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(조특법§21) 5. 기술 및 인력 개발, 공익사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,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 (농특세법§4(12)) (법령§4⑥(1)) ① 연구･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법§10) ②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(조특법§10의2) ③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(조특법§12) ④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(조특법§12의2)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(조특법§13) ⑥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(조특법§30의3) ⑦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(조특법§33)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(조특법§63)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(조특법§63의2) 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(조특법§64) ⑪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(조특법§99의9) ⑫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(조특법§99의11) ⑬ 전자신고 세액공제(조특법§104의8①,③) ⑭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(조특법§104의21) ⑮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(조특법§104의24) ⑯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(조특법§104의28) ⑰ 조특법§121의2부터 §121의4 까지에 따른 감면 ⑱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법§126의6) 6. 고용증대를 위한 감면 (농특세법§4.11의3호) ①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(조특법§30의2) 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(조특법§30의4) 7. 기타 (농특세법§4.11의2, 11의4) ① 조특법§20, §100, §140, §141의 규정에 의한 감면 ② 조특법§121의24에 따른 감면 ※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(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§4⑦).